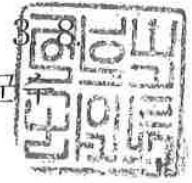
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6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3. 8. 31

제출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
 - 반복적인 조례 개정 방지를 위해 관련 법조문 명시
- 법령에 맞지 않은 조문 개정

2. 주요내용

-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(제8조) 및 협의회 운영 등(제9조)에 관한 사항 개정
 - 제2항은 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.”로 개정한다.
 - 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- 제3장 제목, 제11조의 제목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2항,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전통상업보존구역”을 각각 “전통상업보존구역”으로 한다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(1)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7조의5, 제13조의3, 제48조의2

(2)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, 제4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23. 1. 31. ~ 2. 20.) 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
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 제목 “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”을 “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
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
및 제4조의3에 따른다.

제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장의 제목, 제11조의 제목,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2항, 제
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전통산업
보전구역”을 각각 “전통산업보존구역”으로 한다.

제12조의 제목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통산업보전구역”을 각각
“전통산업보존구역”으로 한다.

제15조의 제목 중 “보전활동”을 “보존활동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전에”를
“보존에”로 한다.

조례 제2382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존속기한)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)	제8조(유통업상생발전협회의 구성 및 운영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협의회는 회장1명과 제4항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②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유통발전법 시행규칙」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른다.
③ 회장은 부군수로 하되, 필요한 경우 다른 임명직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	③ <삭 제>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	④ <삭 제>
1. 군 내에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기업의 대표 2명	
2. 군 내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	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	
가. 군 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 단체의 대표	
나. 군의유통산업분야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	
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 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인	
라.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
4. 유통업무 담당부서 과장	

현행	개정안
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</u> <u>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.</u> ⑥ <u>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u> 1. <u>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</u> 2. <u>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u> 3. <u>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</u> <u>제9조(협의회 운영 등)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 <u>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 <u>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.</u>	⑤ <삭제> ⑥ <삭제> 제9조 ①~⑥ <전문 삭제>

현행	개정안
④ <u>협의회</u>의 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. ⑤ <u>협의회</u>는 대형유통기업과 군 내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1. <u>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</u> 2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2조의2에 따른 <u>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</u> 3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에 따른 <u>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u> 4.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5. 그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간의상생협력촉진,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협의회</u>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<u>협의회</u>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	
제3장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 의 지정 등	제3장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 -----

현행	개정안
제11조(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의 지정 등) ① 군수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을 지정하거나 변경 취소할 수 있다. 제1호, 제2호 (생략)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을 지정하거나 변경,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을 지정하거나 변경,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. 1.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의 범위·위치 및 면적 2.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의 지정·변경 사유 및 목적 3.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 지정·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. (생략) 제12조(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 지정·변경·취소 시 고려사항)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<u>전통상업보전구역</u>을 지정·변경·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 1.~4.(생략)	제11조(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) ①----- ----- ----- -----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제1호, 제2호 (현행과 같음) ②-----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----- ----- ③-----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2.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----- 3. 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)----- -----<u>전통상업보존구역</u>----- ----- ----- 1.~4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제15조(전통산업보존구역의 <u>보전활동</u> 및 지원)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<u>보전에</u>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적·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15조(<u>보존활동</u>) <u>보존에</u>
부칙(조례 제2382호, 2015.11.10.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칙(조례 제2382호, 2015.11.10.) 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 신 설 >	제2조 (존속기한)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48조의2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□ 유통산업발전법

제7조의5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) 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 3. 23.> [본조신설 2013. 1. 23.]

제13조의3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(이하 “전통시장등”이라 한다)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②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려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전통시장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접지역의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요청한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,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8조의2(규제의 존속기한) 제2조제4호, 제8조제1항·제2항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, 제8조제3항·제4항 및 제13조의3은 2025년 11월 23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<개정 2020. 10. 20.>

[본조신설 2015. 11. 20.]

□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

제4조의2(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) 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3. 7. 22., 2019. 9. 27.>

② 회장은 부시장(특별자치시의 경우 행정부시장을 말한다)·부군수·부구청장이 되고, 위원은 특별자치시장·시장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해당 지역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
2.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, 슈퍼마켓,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가. 해당 지역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
 - 나. 해당 지역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다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 협력업체·납품업체·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
4. 해당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의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4. 직무태만,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회의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 <신설 2019. 9. 27.>

제4조의3(협의회회의의 운영 등) ① 협의회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·시간·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

④ 협의회회의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.

⑤ 협의회회의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9. 27.>

1.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
 - 1의2.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
 2. 법 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
 3.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대·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, 공동조사연구, 지역유통산업발전,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. [본조신설 2013. 4. 23.]